

[서식 예]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(증여계약 취소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와 소외 ◆◆◆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○○. ○○. ○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- 2. 피고는 소외 ◈◆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○. ○○. 접수 제○○○○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라는 파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와 소외 ◈◈◈는 중학교 때 친구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 소외 ◈◈◈의 남편



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20○○. ○. ○. 소외 ◈◈ ◈에게 금 30,000,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. 그런데 소외 ◈◈◈는 위 돈의 변제를 계속 미루기만 하여 원고는 부득이 소외 ◈◈◈를 상대로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가단 ○○○○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○○. ○. ○○.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.(갑 제1호증-소장, 갑 제2호증-집행력있는 판결문)

- 2. 한편, 소외 ◈◈◈는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○○. ○○. ○.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(갑 제3호증-부동산등기부등본)
- 3. 채무자인 소외 ◈◆◆의 위와 같은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피고와 소외 ◈◆◆와의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사해행위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

증 명 방 법

1. 갑 제1호증 소장

1. 갑 제2호증 집행력있는 판결문

1.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1. 갑 제4호증 토지대장등본

1. 갑 제5호증 건축물대장등본

첨 부 서 류

1. 위 증명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[별 지]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○○○아파트 제6동

[도로명주소]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 6-1-103

구 조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: 1층 103호 35.0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4003 m²

대지권의 종류 : 위 토지의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: 4003분의 36.124. 끝.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척기간	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부터 1년, 법률행위 있은 날로 부터 5년(민법 제406조 제2항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 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기 타			

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「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」이라고 할 것이므로,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,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음(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2마1156 결정).
- 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위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